

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0. 12. 9.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0. 11. 13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20. 11. 13.

다. 상정일자 : 제245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위원회(2020. 12. 9.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복지정책과장 김경숙

가. 제안이유

개정된 상위법령 내용에 맞춰 조문을 개정하여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상위법령 조항 및 용어 수정(안 제2조, 제5조, 제9조, 제10조)
- 2) 상위법령 반복 내용 삭제(안 제5조, 제9조)
- 3) 별표 내용 변경 및 보완 등

3. 검토보고 (조광현 전문위원)

○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7기 「소통과 혁신으로 더 크고 행복한 마포」 구현을 위한 우리구 행정기구 개편이 2019.7.11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조례」가 개정되어 2019. 8.1 시행되면서, 복지교육국 소관부서도 복지정책과, 생활보장과, 노인장애인과, 여성가족과, 아동청년과, 교육지원과로 변경·설치되었습니다.

○ 한편,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르면 “이 조례에 따라 설치·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명칭·위치, 및 그 주요기능은 별표와 같다”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별표의 내용 중 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사항이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.

○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복지정책과 소관 푸드마켓 2호점의 명칭 및 위치를 정정하고 3호점을 삭제하였고, 가정복지과 소관 “영유아통합지원센터”의 명칭 및 위치를 변경하여 아동청년과 사무로 분장하였습니다.

○ 또한,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“우리마포복지관” 등 10개 복지 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현실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“상암데이케어센터” 등 13개 신규 복지시설도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무로 규정하였습니다.

○ 검토의견입니다.

2019년 8월 1일 조직개편이 이루어짐에 따라 후속조치로 소관 업

무와 관련된 규정, 사무관리, 시설관리 등 필요한 조치들을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고, 특히 산하복지시설 지원, 관리,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인수인계를 통해 조직개편으로 인한 구민 불편이 없도록 관련부서에서는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